

제429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9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3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5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5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5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6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6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6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6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6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
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6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6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7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7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7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7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

상정된 안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6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6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6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6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6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6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6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6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6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6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6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6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6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6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6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6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6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6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6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6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6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6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6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6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6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6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6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6
3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7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7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7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7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7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7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7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7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7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7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7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7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7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7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7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7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7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7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7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7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7
5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7
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7
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7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7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7
5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7
5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7
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7
6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7
6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7
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7
6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7
6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7
6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7
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7
6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7
69. 국유재산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8
70. 국유재산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8
7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8
7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8
7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8
7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8
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8
7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8

(11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5)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5)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3)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3)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8)

3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3)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6)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5)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1)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6)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5)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0)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5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5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5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5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5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6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6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6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5)
6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6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6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6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7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7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7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2)
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7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소위원장 정태호**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14항, 공운법 관련 사항입니다.

6페이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안에 대해서 개정안 간 비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자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시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것들입니다.

임기 연계 대상에 대해서는 각 안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박해철·민형배 의원안은 기관장·이사·감사 전체 임원에 대해서 임기를 연계하자는 안이고요.

이해민·김주영·정태호 의원안은 기관장만 임기 연계를 시키자는 안이고, 박상혁·윤준병 의원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만 연계를 시키자, 정일영 의원안은 기관장 및 감사를 연계시키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임기를 연계시키되 기관장 등의 임기 만료 시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 시랑 맞출 것인지 대통령 임기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유예를 하자는 것인지는 개정안별로 상이합니다.

9페이지 왼쪽 상단을 보시면, 박상혁·민형배·정일영 의원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하고 맞추자는 안이고요. 박해철 의원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경과 시로 3개월 유예기간을 주자는 안이고, 김주영 의원안은 6개월 유예기간을 주자는 안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대통령 교체 시기의 공공기관 운영상 갈등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일괄적인 임원 교체로 인한 행정 공백 발생 같

은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기 연계 대상에 대해서는 임기 연계 대상을 기관장·이사·감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으로 정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법 제28조상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의 입장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국정철학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안정성 이런 측면도 있으니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임기 연계 대상하고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일단 모든 임원들을 초기 단계부터 포함하는 것보다는 기관장을 제한적으로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임기 만료 시점하고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게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여야 할 것 없이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해서 정권교체 시기 때마다 정치성의 문제를 늘 계속 제기해 왔는데 이번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 가운데 이른바 소급 적용, 현재 임명되어서 재직하고 있는 기관장이나 임원들에 대해서 그 직을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종료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진성준 위원** 어떤 법안이 그런 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페이지의 적용례를 보시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하자는 적용례가 있고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도 적용하자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이른바 소급 적용에 관한 문제만 빼면 이 재명 정부에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시행 이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시행 이후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시행 이후 임명되는 기관장.....

○**진성준 위원** 그러면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도 반대할 일이 없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장들, 임원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또 그러자고 들면 저는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교체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되었던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임기를 완전히 종료시키고 중단시키는가. 그러는 게 아니라면 이번에 여야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합의 처리해서 정권교체 때마다 발생하는 그런 정치적 논란과 시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자면 아까 수석께서 보고했던 것처럼 소급 적용 문제는 배제하면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진성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끊고 가는 건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었으니까, 언제나 정권 때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을 논의할 때도 소급 적용 문제부터 우리가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방금 앞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신 이런저런 세 가지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남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합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과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이렇게 많은 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도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임명하고 아까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정철학에 맞춰야 되는 직위들이 있느냐 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직위들까지 전부, 331개를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를 정말 국정철학과 관련되는 직위를 줄이고 그 것들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데 지금 그것까지 논의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게 왜 문제가 됐냐 하면, 각 기관에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정치권에서 가고 사장과 감사는 정치권에서 가지 않는 게 관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사장을 폐지하면서 정치권에서 가는 자리들이 사장과 감사까지 차지하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가는 자리들도 정치권에서 차지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개정안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국회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세 가지,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쟁점 전에 소급입법에 관한 뒷부분부터 정돈을 하고 진도를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정권교체마다 공공기관장 교체 문제가 늘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피해야 된다, 악순환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아마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다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맞추자라는, 연계를 해서 연계성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하는 것은 ‘예스, 노’,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단순한 오엑스문제, 쉽게 말해서 흑백논리로 가능한 한데 이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문제냐, 정부교체기나 정권교체기나 또 정권이 바

될 때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다시 우리가 깊은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실효적인 조치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는 논의, 그래서 심도 있게 되어야 단순히 오엑스문제, ‘여기 도입하자, 이것 필요하니까 하자’ 해 놓고 덜컥 도입해 놓고 나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문제, 300개가 넘는 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춰서 동시에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리의 인사시스템이 가능한 거냐, 물론 독립성을 보장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고 정치권에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그런 현실에서 오히려 더, 정권교체기가 되면 여기에 줄서기부터 시작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낼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정치권에의 의존성은 낮추고 독립성은 높이는 방향이 검토돼야지요.

이 논쟁은 오히려 임기를 보장하는 문제가 확실히 담보가 된다라면 그것이 훨씬 더, 공공기관 운영에서의 실효적인 조치들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 간단히 임기와 맞춘다면 기관장을 5년 임기로 할 것인지 2년 반씩 반씩 쪼갤 것인지, 그러면 그 임기를 몇 개월 텁으로 하면 그게 임기와 맞춰지는 건지, 6개월로 할 것인지 3개월로 할 것인지 1년으로 할 것인지,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인사 논의만 이렇게 전개되다가 그 기관들은 어수선하고 정치교체기마다 혼란만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있느냐,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와서 연구를 해서…… 2차관, 어저께 우리 대체토론 때 내가 간단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대출 위원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논의가 가능한지,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가 돼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 있는 논의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은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박대출 위원 그게 쉽지 않다, 쉬운 방안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김영환 위원 질문 하나만 좀 기관 쪽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김영환 위원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되고요.

정부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기업의 임면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주무 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준정부기관 임면은 최종적으로는 그 해당 부처 장관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나누어 보면 일시에 이것을 하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그 문제가

하나의 초점인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되는 기관의 장 숫자와 부처의 장이 임명하는 장의 숫자…… 그런데 그 부처는 부처별로 죽 나뉘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숫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은 저희가 331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에 해당되는 것은 88개입니다. 그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69개고요. 주무기관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19개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88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 하셨어요?

○**김영환 위원** 예.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방향하고 맞추어서, 전체 공기업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렇게 운영돼야 될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일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국민의 실생활과 연계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 전체를 대통령의 임기와 연계하게 되면 5년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와서 공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해서 새롭게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5년마다 반복되게 되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공백이나 누수도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아까 전체 300개라고,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필수적으로 대통령과 꼭 임기를 맞추어야 될 것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먼저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정한 다음에 소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맞추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맞추는, 그렇게 이번에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저도 최은석 위원님과 박대출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숫자가 엄청 많고 종류도 다 각양각색인데 일률적으로 임기를 일치시켰을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관 중에는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의 정치철학 방향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플럼북이라고, 해당되는 그 부분만 한정을 해서 여야 합의하에서 해당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는,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그런 새로운 정부의 정치철학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그런 부서와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관계가 없는, 약간 구분을 해서 전자 위주로 먼저 저희가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의견은 소급 적용도 저도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많은 혼란이 있고 또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2월 14일에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고 4월 4일에 대통령 파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던 한덕수 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장관이나 총리로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였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고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대해서도, 심지어 파면 이후에도 인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전향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다른 직위는 소급효 인정을 안 하더라도 탄핵소추나 아니면 파면 이후에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인사하는 경우는, 그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을 해서 임기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저는 지금 8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것에 동의하고요.

사실 여기가 정치권 인사만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공공기관의 수장은 관료 출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정치권과의 인연을 통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정부 부처의 추천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비전문적인 인사들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88개 기관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처럼 한꺼번에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 뒤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두어서 한꺼번에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개정안에 찬성 입장이면서 추가로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 적용에는 반대하지만 이번에 12월 14일 대통령 직무 정지된 이후에 임명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일부이지만 직무를 정지시키는 관련된 법 개정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저는 수석전문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모아 줬으면……

어제 OECD 나라 중에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라고 이렇게 입법조사처에서 자료를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 그렇게 했는지, 실제로 입법조사처에서 OECD 30여 개국 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의 예를 다 살펴보고 한 건지 해서, 그 자료 좀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받아 줬으면 좋겠어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저는 차규근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현재 전체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도 있으면 실제로 새로운 정부, 정권 교체 전에……

실제로 정태호 간사님과 박수영 간사님이 논의를 해서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어느 시기에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잘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12월 3일 사건이 나면서 지금 중단됐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혹시 공공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가져온 게 있으

세요? 여기 보니까 자료를 8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공기업 31개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29개고요. 주무기관장이 임명하는 게 2개입니다. 그다음에 준정부기관 57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40개고 주무기관장 임명이 17개입니다.

대통령의 임명은 자산이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개 매트릭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기준이고, 지금 얘기했듯이 좀 구분을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OECD에서 그런 나라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면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혹시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이나 여러 가지 철학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구분해 놓은 것은 없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없고요. 그냥……

○**김영진 위원** 없지요? 구분이 가능하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산 규모라든가 매출액 규모 그다음에 종업원 수 이런 객관적인 기준 말고는……

○**김영진 위원**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치로는 조정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이 문제는 정성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판단하면 아무런 이의도 없는데 사실은 국정철학과 경제정책, 어떤 정부든지 간에 새로운 정부에 맞는 공공기관은 구분해서 하는 정도로 풀을 형성을 해서 그것과 그렇지 않은 그냥 드라이한 결과를 구분하자고 한다면 결론은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거고 아니면 공공기관 관련해 연구했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잡아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정성적으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성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무리 매출액 기준, 종업원 수 기준이 적더라도 같이 맞추어야 되는 기관이 있는 거고 아무리 크더라도 아닌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성적인 사안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

어떻게 보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것은 정량적인 기준으로 일단은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성적인 기준이 들어가는 순간 그 기준에 대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분류가 조금 오분류, 약간 취지에 맞게 분류가 안 되더라도 정량적인 지표로 분류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 자료는 한번 찾아서 주세요.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OECD 30여 개나 다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김영진 위원** 꼭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그것 관련한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8페이지에 나왔던 내용.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저 한말씀만.....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어서 기관장이나 임원의 임기를 종료시킨다고 할 때는 인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요, 인사 겸증해 가지고 후임을 임명할 때까지.

그래서 다른 여러 법안들을 보면 임기는 종료하지만 직무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사 실무를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물리적인 시간상의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캡 이것은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미 해결하자고 하는 취지의 법안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권교체 시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소모적인 논란 이것을 차제에 좀 끊고 가자 그리고 그것이 일부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이 정부, 현 정부가 이를테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 놓는 조치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아까 차규근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또는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임명이 된 임원들이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것은 일견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장들이나 임원들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것은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것에 해당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법률에 의하면 직무평가를 시행해서 그 직무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기관장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여야가 이 문제의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대출 위원님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 조항들도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들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도 잠깐만.....

○**소위원장 정태호** 예.

○**최은석 위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 이게 정량적으로 자르면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은 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의 속성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이나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있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대통령의 국정 정책 방향과 연계해서 수시로 우선순위 같은 게 바뀌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하나씩 보면 금방 여야 위원님들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정성적이라서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우선 1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되네요. 박대출 위원님은 임기

자체를 일치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하시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는 거고. 일치 자체에 찬성을 하더라도 지금 대상이나 만료 시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치시키는 데 동의를 한다면 이것은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소급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계시고 차규근 위원님도 또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상계엄 이후에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쟁점이 나눠지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12시까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쟁점 정리를 해 놓고 넘어가시지요.

다음 거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임기 단축 및 연임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상혁 의원안 및 박해철 의원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임 기간도 지금은 1년 단위로 가능하나 연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는 안이고, 윤준병 의원안은 연임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임하되 최대 2년으로 제한하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관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사·감사에 대해서는 박상혁 의원안이나 신영대 의원안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최대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이사·감사의 연임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윤준병 의원안같이 연임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총 2~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문제하고 관련 있는 기관장의 책임 있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것처럼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 내용이 방금 논의해 주신 1-1의 임기 일치하고도 지금 연계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임기 일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 일치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기관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낮추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제가 민간에 있을 때 CEO 경험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면, 기관장이 임기 2년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중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그 기관의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 같은 것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3년을 2년으로 줄이게 되면, 2년으로 된 기관장들이 계속 바뀌게 되면 그

기관의 실질적인, 깊이 있는 기관 운영 같은 것들이 많이 제약받을 가능성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3년 정도가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임기만을 정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문제도 다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 다만 쟁점별로 나누어진 검토보고도 기본적으로 임기 일치를 전제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핵심 문제에 대해서 가닥이 타져야 이 문제도 스무스하게 심사가 가능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진성준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논의, 죽다 지나가고 돌아왔을 때 우선순위에 있는 것 즉 임기 일치 부분부터 합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영진 위원님 제기하셨던 이슈 즉 국정철학과 관련되는 것들을 88개 그대로 다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기술적인 기관들까지도 다 맞출 것이냐,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그것까지도 함께 연계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국정철학 관련된 기관들의 수를 줄인다면 거기는 예를 들면 2+1로 한다든지 2.5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직무를 해 보면 2년은 뭐 한 개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굳이 나머지 기관들까지 다 2년으로 줄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즉 앞의 1-1 안건과 1-2 안건이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다 지나갔다가 다음에 뭐부터 결정해서 논의해야 될 것인지를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한 번 커버는 해야 될 거거든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지요.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논의 자체가 일면 연계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전혀 별개의 사안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3년이라는 임기가, 3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일선 기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2년은 짧다, 3년으로 하겠다, 기존의 3년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3+1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에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도입되고 좀 더 기업화된 운영이 가능하다라면 단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리는 방안도 가능한 것이고, 지금 꼭 그 임기에 연계해서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별개의 사안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마 이 임기 단축안이 나온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임기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또 박대출 위원님 말씀처럼 별개로 논의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발의하신 분들의 취지 자체는 아마 임기 일치하고 연계시켜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정리돼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2번으로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대통령의 보장된 임기 내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통령 임기 말의 레임덕 현상 심화로 인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등을 감안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기는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나 목적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법률에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명권자가 자율적으로 임명 안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박대출 위원** 지금 법안 내용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예.

○**박대출 위원** 법안 내용을 보면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개정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공기업 기관장이 불가피하거나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공백이 왔는데 그 공백을 그대로 6개월 이상 방치해야 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소지를 안고 있는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논의들이, 제가 뒷부분의 법안을 봐야 되겠지만 임기 보장이 돼 가지고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가지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치가 있다면 이런 논쟁들이 왜 필요한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정치적인 공방, 소모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라는 그 필요성에서 이 모든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답답한 입장인데 여야가 입장이 바뀌더라도 보다 지속가능한 장치를 우리가 국회에서 마련해 놓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에. 저는 그런 생각을……

○**박수영 위원** 1년마다 막 바꾸면 어떻게 해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플럼북, 아까 차규근 위원님이 얘기했나요?

○**차규근 위원** 예, 플럼북.

○**소위원장 정태호** 플럼북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플럼북을 작성하는 것은 미국 의회에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임명권자는…… 저는 임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대통령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저도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최소화해서……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서 책임 있게 정부를 이끌어 가게 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여하튼 지금 6개월 이 부분도 사실 임기 일치 부분과 또 연계해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정도를 저희들이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절충안을 제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예.

○**박대출 위원** 우리 정부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예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그것도 국정철학에 맞출 필요가 있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추려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부분은 논의도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22페이지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2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대통령 파면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 의원안은 권한대행 체제인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선희·윤준병 의원안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재부장관 및 주무장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 행사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조계원 의원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파면된 경우 일정 기일 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대통령선거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이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재부장관이나 주무장관의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까지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런 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의도 또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 법감정에 충실하려는 그런 목적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되거나 파면된, 권한대행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파트에서 또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가 어디까지 위헌이고 합법이 아닌지가 포괄적으로 정리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조항도 같이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차관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관해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있는데 학계라든지 헌법학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돌이켜보자면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빨리 임명하라 그래 가지고

대행이 두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여기는 또 빼내는 우리 자체에서의 모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관한 논의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지금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모순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환 위원** 저 한마디만……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 추천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 추천 몫이 아니었던 거고요. 국회 추천 몫을 인정해 달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정부 사이드 추천 몫을 추천을 안 했잖아요. 그때 탄핵 제출이 되고 헌법재판소 가기 전까지 현재 위원 추천을 정부 사이드에서 한 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때 정부 추천 몫은 국회가 탄핵을 했으니 정부 사이드 몫은 포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박수영 위원** 뒤에 했지.

○**김영환 위원** 아니, 뒤에는 했지요.

○**박수영 위원** 탄핵 직후에 했다고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탄핵 직후에는 했지요. 그 전에는 안 했거든요. 의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적극적으로 인사를 행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우리 헌법에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권한대행 체제에서 현상 유지만 하라는, 현상을 유지·관리하라는 그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개정안 주요 사안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로 연속성을 봤을 때 이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들 그게 대통령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서 여러 가지,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들의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들 그중에 예를 들면 기관장의 임기가 없거나 기관장이 갑자기 유고해서 기관장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했을 때도 당연히 국정의 현상 유지가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그런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들은 현상 유지의 목적에는 상당히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에 대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헌법적이거나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 개별 법에서 하나하나 인사권이나 다른 것들을 제약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이 법안 내용이 탄핵소추 이후가 아니라 대통령 파면 선고 시입니다. 권한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 선고 전까지는 그래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파면이 됐다는 것은 바로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파면된 이상 지극히 현상적인 그것도 공정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한 임무에만 권한대행의 책무는 국한되는 것입니다. 언제 새 정부가 들어설지 알 수 없다 그러면 공공기관에도 혼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예정돼 있는, 예측된

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소추도 아니고 대통령 파면 선고가 됐다 그러면 명확하게 국민 법감정에도 반하고 민주적 정통성에도 반하는 권한대행의 공공기관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 인사권의 제약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기재부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 예컨대 기재부장관권한대행이다 그러면 기재부장관으로서 원래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는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두 번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또 탄핵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이런 조항까지 넣어야 되는지 저는 매우……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예상하고 넣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승래 위원 그런데 권한대행이 있으면 기관도 사실 직무대행이……

○소위원장 정태호 조승래 위원님, 이름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조승래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예.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그런데 법안이라는 게 원래 항상 이러저러한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법안이 또 필요하긴 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차규근 위원 말씀하신 것 저는 좀 합리적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바로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실제로 각 기관들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없으면 부기관장이나 또 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행들이? 직무대행들이 그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제한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참 가정을 두고 얘기한다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법은 가정에 기초해서 할 수도, 또 해야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거는 아까 논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권한대행의 직무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과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정리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소위원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차규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시점부터 권한대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해서 인사권 행사하면 되니까, 혹은 탄핵되면 그 이후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일정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안은 파면된 이후이고 제 관점

은 소추된 시점부터.....

○소위원장 정태호 예, 안건 하나하나마다 상당히 수준 높은 토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진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심사자료 1권, 28페이지 4번입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운위 민간위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연계시켜 공공기관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운위 위원이 일괄 교체됨으로 인하여 공운위 운영의 연속성 저해 우려 등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측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타 정부기관의 위원회에는 아마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그 방안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면 공공기관운영위의 민간위원 임기도 동일 선상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최은석 위원 동일 선상에서.....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연계돼 있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신영대 의원안은 정부 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안은 국가비상사태 등에 따라 새로운 정부 출범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에게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기관장·감사·감사위원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제출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에게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의 해임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국정철학 및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 현행법상으로도 경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직무·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해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조항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 제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경영목표가 변경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장·이사·감사의 해임이 가능한지의 여부인데요. 두 개 다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항을 만드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최은석 위원 정부 측 의견이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기관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관장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공운위법 제35조 3항에 보시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한 적도 있고 시행 안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지금도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할 겁니다, 이제.

○소위원장 정태호 할 거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해임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차규근 위원 군이 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이지 않고 과도한 입법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그거와도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자체로서 좀 과도한 입법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동의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 일단 35조, 36조, 48조 이런 것들이 다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비슷한 내용인데요, 34페이지 6번입니다.

개정안은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장과의 계약의 이행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 위반이 발견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계약의 이행 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는 기관장 평가(31조 제6항)와 경영실적 평가(48조 제1항)를 통합하여 운용 중이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어떤가요, 정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조항하고 관련해서는 기관장은 현재 평가가 가능한데요.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 위반이 발견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기관장의 책임 있는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이요.

○최은석 위원 정부 측은 지금 그 조항만 추가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36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이미 있고요. 이번에 새로 하려는 게 그 뒤에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뒤에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이요.

○최은석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7번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번, 3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경영실적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국제적 기준 및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을 반영하도록 하며 평가 반영 필수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평가 기간을 단축하며 운영위원회에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고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제 기준 등 반영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나 경영실적평가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이나 학술적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필수사항을 재량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이러한 필수적인 평가요소 등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기간 단축에 있어서 현행법은 경영실적 보고서 등을 매년 3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영평가는 이러한 경영실적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한을 현행 6월 20일에서 5월 30일까지로 단축할 경우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되어 해당 기간 내에 실무적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평가 결과의 운영위 보고는 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별도로 사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실익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기에 지금 네 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요.

첫 번째, 평가를 할 때 국제적 기준이나 학술적 방법이 존재하는지하고 관련해서는 현재도 평가와 관련해서 기준을 만들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문으로 명문화하더라도 별문제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평가 필수사항을 재량으로 변경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37페이지 왼쪽에 있는 박스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2·3·4·5호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요.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을 정도, 주요 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이런 항목들은 특정 공공기관에 특별하게 적용된다기보다는 모든 공공기관에 필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특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는 재량으로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 단축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한 3개월 정도가 경영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시기로 돼 있는데요.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부실한 경영평가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요.

이렇게 굳이 두 달로 단축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산과 잘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6월 20일 날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짜는 9월 3일입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38페이지 네 번째 항목도 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별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실익은 적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요.

○**최은석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저는 경영실적평가가 공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한번 심도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운위 자체 개혁방안을 아예 총리실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재평가 요구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또요.

○**박대출 위원** 이것 국제적 기준이나 학술적 방법이 존재하는 데 대한 검토 필요…… 검토를 해 줘야 될 곳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검토의견 말이지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저희가 기재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답변이……

○**박대출 위원** 기재부는 자료가 없어서 안 낸 건가요, 뭔가요? 기재부 답변은 뭐예요?

○**기획재정부평가분석과장 김준철** 평가분석과장 김준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구 자체는 아마 자료를 못 받으셔서 조사관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 같고요.

저희가 경영평가 할 때는 지금 구체적 방법론이 통일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영학이나 학술적으로 쓰는 말콤 볼드리지(Malcolm Baldrige) 모델이라든지 BSC 모델을 준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경영평가의 룰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박대출 위원** 여러 가지 모델들은 있는데 국제적인 기준 이렇게……

○**기획재정부평가분석과장 김준철** 통용되는……

○**박대출 위원** 표준화된 기준 이런 뜻으로 국제적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거기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모델하고 모아 가지고 우리만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기준이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 재검토나 이런 것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평가분석과장 김준철** 지금 저희 평가 방식은……

○**박대출 위원**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평가하는 기준이나 또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제기된 것 중에서 다양…… 좀 통용되고 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델들을 종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평가가 좀 더 개선할 게 있는지 없는지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지금 현재의 기준이 충분하다 아니면 이런 것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스터디를 내 가지고 소위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문에 규정을 삽입할 건지 말 건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경평의 방법론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검토할 포인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개정안 법안에 국제적 기준이나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반영되고 있는 데서 충분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문구가 없는 건데 넣은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런데 저희가……

○**박대출 위원** 이 표현이 지금 새로, 개정안에서는 없는 표현이 들어간 거거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저희가 여기 있는 표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은요,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국제적 기준이나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저희가 충

분히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법들을 반영해서 평가.....

○**박대출 위원** 충분하다는 것은 2차관의 판단입니까? 충분히 연구가 된 내용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의 판단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혼자서 답변하지 말고 검토해서, 실무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라고. 항상 2차관이 답변을 뭔가 단정적으로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러면.....

○**박대출 위원** 지금 2차관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영환 위원** 간사님, 저 한번.....

○**소위원장 정태호** 예.

○**김영환 위원** 혹시 실무자 누구시라고.....

○**기획재정부평가분석과장 김준철** 평가분석과장입니다.

○**김영환 위원** 과장님, 현행법 실적 평가 7호에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텐데 이를테면 최근에 우리가 시대 환경이 달라지면서 ESG 평가랄지 사회에 대한 공익성 그다음에 책무성,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나 요구들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평가분석과장 김준철** 지금 규정 보시면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 외의 그 밖에 요소라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SG 이런 부분은 편람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정·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효율성 그런 기본적인 점수하에서 예를 들면 기후·환경이라든지 안전의 중요성들이 늘면 때에 따라서 그 부분이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그런 틀로 유지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기후·환경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변화 내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기 위해 기타 그 조항을 통해서, 편람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마이너스, 가감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의 요구는 아마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학술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용성 있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박대출 위원** 지금 그 설명은 해마다 조금씩 편람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한 건가요?

○**기획재정부평가분석과장 김준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가점은 아까 말씀드린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플러스 정책 환경, 행정 환경 변화들에 따른 요인들이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부처 요구들에 따라서 가감이 되고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으니까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시지요.

○**김영환 위원** ISO 25000 그런 기준들도 좀 있을 거예요. 국제적으로 정확한 명칭이 ISO 25000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유엔 국제기준이랄지 기관평가를 할 때 그런

기준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 그런 것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이 개정안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 취지를 살려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시지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이것 전체를 종합해야 되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거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로 기재부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재부 의견은 재평가 요건이 자의적이라는 의견이고요.

검토의견은 현행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요.

개정안은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그 요건이 자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21년에 20년 경영평가의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10개 기관의 등급이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후속조치 내용이 수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필요성과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측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는 경영평가하고 관련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잠정적으로 완결된 절차로 이루어지고 국회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 의결로 재평가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 운영과 공공기관 평가의 안정성이 상당히 저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건에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어서 이 부분 또한 역시 경영평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이 부분은 국회 의결은 그다음이고 처음에 현저하게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주체나 방법 이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한번 그 타당성이나 정합성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더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또요.

○김영환 위원 보통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여기서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구상.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치르고 나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정부 측에 내지 않습니까, 국회 의결을 통해서.

그런데 그에 따라서 그 지적사항들이 수정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현저히 발생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환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구조가 현 시스템이라고 저는 읽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회는 말만 하고 정부는 안 고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구조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나 혹은 특별한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기준들을 좀 정리만 해 준다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 측의 일방적인 평가에 대한 보완 작용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저는 우리 국회가 어디까지 마이크로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기재부가 평가를 하고…… 기재부 혼자서 평가하는 것도 아닐 텐데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되면, 시간도 또 30일 이내에 하게 되는데 정부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느려지거나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정부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적을 하고 정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부에 일정한 재량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평가까지 일일이 국회가 관여해서 평가한다는 건 저는 마땅치가 않다.

즉 기재부의 재량으로, 기재부가 나름대로 또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지적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해 가지고 무슨 재평가를 요구하고 평가 결과를 다시 받고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아까 전에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라는 문구가 있고 또 경영실적 평가 결과라는 것은 정량적·정성적 평가 결과들이 다 국회에 보고가 되고 국회에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 현저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국회에서 의결해서 재평가 요구를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기재부의 자체 경영평가가 더 신중해지고 더 정밀해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조항 도입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면, 그건 국회 전체의 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회가 아무 근거도 없이 평가를 다시 하라 이렇게 할 리는 없을 건데.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이라는 그 자체가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물론 재량의 범위일 수도 있지만 정부는 더 철저하게 평가를 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박대출 위원** 있다는 건데 객관성을 잃은 것도 현저히라는 구체성을 좀 담고 있어 가지고 만일에 국회를 주체로 한다면 이 문구 자체는 ‘판단되는 경우에’를 ‘판단하는 경우에’로 해 버리면 주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절차적인 의미는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평가에 대한 객관성 훼손 여부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적으로 아니면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이걸 바로 우리 국회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시스템이 지금 구비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회이나 그런 데서 충분히 가능한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회 소관 상임위나 그런 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협의가 이루어지면 할 수는 있는데 평가의 객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질 수 있느냐 묻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희 조사처나 예정처나 각종 지원기관에서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예산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평가과에서 그 경평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의 보고서 내용이 나오면 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사유로 재평가 요구는 가능한 경우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일어날 경우에는 견제장치를 그냥 하나 갖는다라는 의미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더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기재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들에 대해서 저도 전현직 위원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평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하는 거라 이 부분은 어떻게든 국회 차원에서 체크하는 기능을 이번 기회에 하나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정권 차원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잘 논의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대체적으로 다수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흐름인데요. 김영진 위원님은 반대의견인가요?

○**김영진 위원** 저는 소수의견입니다.

(웃음소리)

뭐냐 하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의 판단 자체도 사실은 자의적인 형태로 많이 갈 수 있고 특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

지 죽 해 왔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대로 사실은 평가를 해 왔었는데, 그에 따라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또다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구체적인 부분까지 가서 국회의 의결로 수정을 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실효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국회가, 현재 우리 국회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요청해서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지.

사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그 상위에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데 또 의회에서 그걸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라서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그에 따르는 개선의 효과들이 있을까에 대한 판단 근거가 저는 약간 미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 아까 보면 중간 부분에 2021년에 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오류 발견하여 수정했다 그다음에 23년 감사원은 경영평가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이렇게 하면서 수정…… 수정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영진 위원 저는 그래서 한번 이건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수정 요구를 할까, 그것과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 차원의…… 만약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면 현안질이나 국정감사 간에 질의를 통해서 수정 요구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수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경영평가까지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논의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진성준 위원 이미 나온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경영평가의 결과를 수정하라고 요구한다기보다 다시 평가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요구일 거라고 하는 점을 봤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과거의 경영평가에 대한 감사의 결과나 재평가 결과를 보니까 일반인의 눈으로도 지적될 만한 사안들이 지적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평가편람의 적용하도록 돼 있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든가 서로 다르게 적용했다든가 또 과거에 무슨 금전적 대가를 받은 평가위원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평가위원들이 또 들어와 있다거나 이렇게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사안들이 지적되어 왔던 것을 보면 국회가 정부가 시행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그것이 잘 수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국회가 볼 수 있는 눈에서 지적되어서 정말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것 이니까 이런 정도는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또 투명성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이런 권한을 갖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딱 보니까 4 대 1 대 3입니다. 그래서……

○박수영 위원 1 대 3? 저는 어디, 소수의견인데요.

○박대출 위원 나도 지금 모르겠는데요. 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판단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과도한 국회의 간섭이나 악용 소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신경이 쓰여서

판단을 하는 데 조금……

○**소위원장 정태호** 여야 구분 없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어차피 이건 간사끼리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4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공공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추가하고 국가의 책무로 공공기관 운영의 공익성,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공공기관 운영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도, 사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공공기관 목적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수영 위원** 전문위원님,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뭘까요?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재정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만 의미하면 차라리 재정건전성을 넣는 게 낫고 지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또 상당히 넓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해서 개념이 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기서 저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그 역할 자체가 이미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목적이 이미 달성돼 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통상적인 재무건전성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셨을까, 이 안을 이렇게 제안하신 분은 그런 취지가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우리 소위원장님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진 위원** 소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뭐 독심술도 아니고.

○**박수영 위원** 위원장이 설명해야겠는데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정태호**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최은석 위원** 통상적으로는 ESG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김영진 위원** 예, 그런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기본적으로 저는 정태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경영 평가에 관한 조항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공운위 운영 전반에 관해서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한번 해 가지고 전반적인 공운위 개혁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

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공운위를 현재와 같이 기재부 산하가 아니라 별도로 독립하는, 총리실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그런 법안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향후에 그 법안까지 포함해서 공청회나 소위에서 한번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도 비슷한데요. 평가 관련 이것도 비슷한 건데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공공기관의 본부가 있고 그래서 현재는 혁신도시로 쭉 많이 펼쳐져 있고 또 지사와 지역본부가 있는 경우도 많고 한데 저는 실제로 한번 전문가 평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는 여러 가지 얘기로 보면 본부에 있건 지사에 있건 지역본부에 있건 과연 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역할과 역량에 맞게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잘 점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의원실로 오는 민원들에서 많은 부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냥 포괄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또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안정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해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 현장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차규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 번 정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규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여러 가지 정보나 제보 아니면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지금은 좀 바빠 가지고요. 심각합니다, 제가 들어 본 바로는.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최은석 위원** 여기 지속가능성 관련해서는 실은 이게 민간이건 공공이건 간에 그 조직이나 단체가 추구하는 그런 비전하고도 되게, 아주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 이것들을 반영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은 얘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별 이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상장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학병원을 추가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나 혁신, 경영지침을 정하는 경우 상장공기업, 대학병원 등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장공기업 유형 변경에 대해서는 상장공기업 유형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 변경 및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KPS 등 3개의 준시장형 공기업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9페이지 보면 특성 반영 의무화에 관해서는 상장공기업이나 대학병원은 그

특성이 다른 공공기관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조정이나 혁신, 경영지침 시 그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조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사안이 섞여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장공기업 유형을 시장공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하고 다른 하나는 대학병원을 세분화하는 두 가지 항목인데요.

첫 번째 항목의 상장형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처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이사회 의장 변경이나 감사위원회 설치 그리고 시장에 이미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경평에서도 조금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관리의 자율성도 일반 공기업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대학병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내부적으로는 대학병원을 여기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 놓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사를 스카우트해야 되는데 인건비 제약을 받으니 좋은 의사 스카우트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원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역필수의료 실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정부 내부에서는 지금 대학병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을 이 안에서 세분화해 보자 이런 논의는 지금 꼭 필요한 논의는 아닌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각 국립대학하고 국립대병원들은 완전 별도 범인입니까, 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별도로 취급이 됩니다.

○**박대출 위원** 재정적으로 다 독립된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뀔 때 전체 플러스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지금 4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시장형 공기업하고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 이사회 의장을 기관장이 아닌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도록, 기관 운영하고 이사회를 분리하도록, 지배구조를 더 엄격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감사를 두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어떤 강화, 감사제도의 강화를 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이렇게 바뀌기 전에 현행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많이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특별히 보고된 사례는 없는데요. 상장된 공기업에 대해서 특성에 따라 앞으로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 분류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앞으로 상장된 공기업은 달리 취급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개정안이 나온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이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차관님, 이것 상장공기업들,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주인이 주주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기업으로 꼭 분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운법에서 말하는 제약들을 이렇게 가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습니다, 주주가 있는데 우리가 이사도 아니고 왜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병원들도 수익을 내고 병원을 발전시켜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공운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공공기관들하고 특성이 전혀 다른데 같은 법에 놓어서 묶는 게 옳으냐.

그동안에는 기재부에서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급적 공운법에 많이 넣으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 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너무 다양한 특성이 한 법에 포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특성에 맞지 않는 기관들, 즉 상장기업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운법에서 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박수영 위원님이 주신 것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신 것 같고요, 이것을 꼭 공공기관으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공익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공공기관의 성격도 있고 상장이 되어 있으니 또 시장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완전히 해제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장된 기업들과 거의 동일한 그런 식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누리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상장되어 있으나 시장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일단 시장형으로 같이 분리를 해서요, 시장에 상장된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지배구조로 바꿔 주고 경영의 자율성도 부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박수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 주신 부분은 조금 더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것 스터디를 해 가지고 예상되는 장단점, 어떤 변화가 오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수영 위원 그동안, 제가 근무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기재부는 안 내놓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잡아넣으려고 그러거든요. 틀에 묶어서 자기 소관 기관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관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지만 제대로 된 기재부 차관·장관님 오셨으면 이것은 한번 손을 볼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주가 있는데 주주 놔두고 정부가 개입하면 주주들이 소송 제기하지 않나요? 한전 같

은 경우에 그런 움직임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형이냐 준시장형이냐로 나누는 것은 상장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기업 규모, 이를테면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일 경우, 대기업들의 경우만 시장형 공기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준시장형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럴 이유가 없다, 오히려 경영의 투명성이나 주주 충실의무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분명하게 하려면, 이번에 상법이 개정된 것처럼 하자고 그러면 이사회 의장을 기관장이 겸임할 게 아니라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하도록 하고 또 감사만 한 사람 설치할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자 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상장된 공기업의 경우 이렇게 확대 규정하자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박수영 위원님 말씀이 공기업을 민영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시장형 공기업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니에요? 좀 더 시장 논리에 맞춰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되 다만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게 준시장형에서 시장형으로 가는 건데 박수영 위원님 말씀은 아예 여기서 빼 버리면, 또 이게 공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근본적인 변화다 이런 고민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지금 방금 박수영 위원님의 주신 얘기도 사실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단계로 바로 가기는 어려우니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뭔가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이게 개정의 실익이 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숙의를 하지요.

○**박수영 위원** 병원은? 병원은 별로 얘기……

○**소위원장 정태호** 병원 얘기는 특별히 없으시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시장형 공기업 안에서도 사실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거의 배당형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봐요, 특정한 독점을 허용해 주면서.

그리고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난방공사는 사실은 사회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또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어서 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영역이고 이런 인프라 사업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이 구조가 무너졌을 때 사실은 시장에서 회복 불가능한 구조여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 영역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밑의 한전KPS 여기는 뭐 하는 회사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발전소 같은 데 설비 유지보수해 주는……

○**김영환 위원** 그러면 보안성이 뛰어난, 보안성이 강화되어야 되는 영역이고 한국전력 기술도 그렇고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조금 강원랜드 성격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차라리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장형 공기업 이런 성격보다는 주로 정부가 이 목적이 사회서비스나 국민들의 요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적 성격이 강한 건데 상장을 해 놓은 것들은 그냥 어떤 독과점으로 인해서 배당적 성격이 강한 것들…… 그냥 자체수입 비중이 85% 이상, 50% 이상 뭐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성격들이 애매모호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자라는 부분도 저는 의미도 있고 또 아예 기타공공기관에서 빼서 자율적으로…… 의료대란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자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양쪽의 의미가 다 전달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스스로가 어떻게 혁신하고 또 지역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체 역량을 키워서 좋은 의사를 데려올 수 있고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이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목적에 맞는 형태와 내용을 주어야 이 기관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타공공기관에서 아예 빼 버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간사님 의원안처럼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나 혁신, 경영지침을 정하는 경우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일장일단이 양쪽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저 한말씀만 좀……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이 마지막……

○**박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만 한말씀 더 드리면, 공기업들 보시면 한전부터 시작해서 그랜드코리아레저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운법에 분류만 되어 있다 뿐이지 사실 기재부가 관여하지도 못해요. 이것 주무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 위원님이나 저나 산업위원회에 근무할 때 이 기업들 전부 산업부에 와서 보고하고 산업부가 통제를 다 하고 가격결정도 국회에서 요금 올리지 말라고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운법에 또 넣어 가지고 또 공운법 쪽에 보고하고 관리하는데 기재부 공공정책국도 ‘사실 그것 들어만 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업부 가서 물어보세요’ 실제로 이런다고. 그런데 뭐 하려 이렇게 굳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대학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보건복지부를 자기 상전이라고 생각하지 기재부가 우리 주무관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결론 안 날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수입액 비중이 80% 이상 말고 100%도 있습니까? 7개 중에서 전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김영환 위원** 모든 기관은 기타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11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입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운위 위원장을 2명으로 하고 민간위원 수 확대, 분과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 등 공운위 구성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위원장에 대해서는 현행 기재부장관에서 기재부장관 및 민간위원 1인 해 가지고 총 2인으로 바꾸는 개정안이고요. 민간위원은 현행 11인에서 개정안은 14인으로 바꾸고 1인의 경우 상임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은 인사·보수·혁신·경영평가 등 분야별로 분과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 시 재심의 필요 안건 외에는 전체위원회인 운영위가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처 설치에 대해서 공운위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인 민간위원이 사무처장을 하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53페이지 보시면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1인 체제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 간 의견이 상이할 경우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운위는 연중 상시적인 소관 사무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 의결 안건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기관이라는 점과 공공기관의 상시적 관리 감독 측면에서 상임위원 제도를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현행 시행령에 이미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어 인사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 시 운영위 심의 의결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이 있으나 공운위의 의결사항인 중요 결정에 전체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대표성이나 민주성이 저하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무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운위는 별도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나 연중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상임위원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를 지원·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무처 조직 신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동시에 포함돼 있는데요.

첫 번째, 현행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에 민간위원 1인을 추가해서 총 2인으로 하는 문제

하고 관련해서 공운위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민간위원을 현행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는 것 또한 똑같이 공운위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민간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이 실질적으로 사무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소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분과위원회가 있고 본 공운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본 공운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보수 위원회하고 관련해서는요, 61페이지의 5항을 봐 주십시오. 5항을 보시면 ‘보수 분과위원회는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 의결하고’, 심의 의결하고 있는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분야 분과위원회든 아니면 다른 분과위원회든 본 공운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심의 의결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된다’ 이 부분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을 삭제해 버리게 되면 5번에 보수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분과위원회의 이 항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처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기재부 공공정책국의 기능 자체가…… 여기는 기재부장관과 민간위원 1인, 총 2인의 공동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편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이니 기재부 공공정책국을 사무처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박대출 위원 기본적으로 자리를 늘리게 되는 결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고요. 또 특히 공동위원장 체제로 둔다면 이미 효율성 문제에서도 좀 의문시된다, 공동위원장의 의견이 같다면 불필요한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거고 다르다면 갈등관계를 가져올 거고, 그래서 어느 경우도 다 비효율적이 될 것 같고요.

중간 정도에서 단지 위원장의 보완적인 의미로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위원들의 역할이지 공동위원장의 역할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열핏 듭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성이 있나 싶어 좀 의문시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이요.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지금 정부위원회 중에서 공동위원장 선임된 사례가 많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옛날에 새만금위원회 여기가 공동위원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은석 위원 최근에는 특별한 사례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때는 총리하고 민간위원 한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을 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아마 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구성돼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공동위원장이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오히려 위원장을 그냥 일반 민간위원이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건도 저도 박대출 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뭔가 전체 일자리 늘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준 위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진성준 위원** 공공기관 운영이 공적 책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활성화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은 정부·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운영이 방만하다라는 지적과 평가를 많이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또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써 왔습니다만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개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운영을 전부 통제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될 운영지침 또 봉급, 임금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여기에 민간의 시각이 들어가서 국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얘기하게끔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 방안 중 하나로도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기능을 개편되는 재정경제부가 지속적으로 하되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냥 운영위원회를 맡아서 진행되게끔 하자고 하면 개혁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민간의 시각,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기관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원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지금 앞선 논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재부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이 공운위법이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 그리고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공공국의 제도기획과장 오정윤입니다.

공공기관이 다루고 있는 인력은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40만 명이고요. 인건비 개념으로는 30조 그다음에 총인건비 개념으로는 24조입니다.

○**조승래 위원** 전체 사업비까지 포함하게……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사업비까지 다 포함하면 936조, 900조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950조 가까이 되는 거니까, 연간이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지금 내년도 우리 정부 예산이 728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승래 위원 728조에 비추어 보면, 저 통계는 아마도 작년 통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내년쯤 되면 한 1000조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재정, 예산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 혹은 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혁신 같은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공운위법을 개정하는 취지도 바로 그런 취지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민간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앞서 박대출 위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는 대통령 혹은 총리 또 장관과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공운위의 위상을 좀 더 키우는 측면이 있으니까 키우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민간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무처장의 역할은 또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이 안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차관님, 공운위는 지금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 알고 있나요? 작년에 몇 회 공운위 개최를 했고 장관이 직접 주재한 게 몇 번 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공운위는 매월 한두 차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총리가 직접 주재하시는 건 경평하고 공공기관 지정 이건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그 외에 한두 차례가 더 추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자주 하는데, 대부분은 장관은 지금 안 가시는 것 아닙니까? 경평이 제일 중요하니까 경평 때 들어가서 조정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제 기억에도 장관이 직접 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승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규모가 크고 인력도 많고 이것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싶으면 장관이 직접 챙겨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지금 체제로도 장관이 챙기면 되는 것이지, 위원을 늘리고 민간 상임위원을 두면 공무원 자리 하나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은 민간이 아니지요. 상임위원이면 상임이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고위직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공공정책국은 없애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공공정책국의 기능이 사무처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원에는 공공정책국장이 가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대충?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은 따로 뽑고 공공정책국은 거기에 붙어서 또 도와드리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알파로 민간 상임위원이라는 거는, 상임위원은 즉 공무원이 하나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다면 장관이 직접 챙기면 되는 거지 거버넌스만 자꾸 크게 한다고 직접 챙길 수 있느냐. 오히려 공동위원장 한 자리를 보면 정부 측 위원장은 참석을 안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나 하는 실질적인 걱정을, 제가 큰 방향에는 조승래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그랬다가는 오히려 관리가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 31년 공직 경험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위원** 이것도 자칫 낙하산 논란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 부작용도 예상되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공동위원장은 찬성, 상임위원 두는 거는 검토?

○**최은석 위원** 공동위원장 찬성이라고 하시면 좀……

○**소위원장 정태호** 아까는 차라리 민간위원장 한 사람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은석 위원** 제가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최은석 위원** 아니요, 그냥……

○**소위원장 정태호** 하려면 그렇게 하는……

○**최은석 위원** 차라리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기재부장관 말고 새롭게 다른 사람이,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하면 되지 굳이 2명일 필요가 있나 이런 취지……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최은석 위원** 예, 그래서 2명은 아닌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진성준 위원** 이 법안은 정태호 소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가 그 필요성이나 의도를 더 열심히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부총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재부장관도 더 많은 정신을 여기에 쏟아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규모 그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와 열망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장관은 더 많은 관심을 쏟되 그리고 역시 민간에서 공동위원장 해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민간위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무슨 자리 하나 늘린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정부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시각과 국민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 이냐, 더 폭넓게 반영할 것 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부총리가 당연직으로 겸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을 민간과 공동으로 한다, 또 이 위원회를 사무적으로 보조하는 사무처를 설치하고 민간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처장을 맡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고 국민 참여적인 발상이다 그런 거지 그냥 공무원 일자리 하나 늘리고 낙하산 하나 내려보내려고 자리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지금 민간위원이 벌써 11명이 있는데 이걸 14명으로 늘리면 민간의 시각이 더 많이 반영된다, 그런가요? 11명으로도 충분한 숫자가 아닌가. 다른 데 비해서 민간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건데, 11명은.

차관님, 다른 위원회에 20명, 30명 되는 데도 있지만 11명 정도면 잘만 구성하면 민간 의견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민간 상임위원이라고 하는데 상임위원이 되면 이미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뽑겠다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렇지요?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민간 출신으로 하는 거니까.

○박수영 위원 민간인은 아니잖아요. 민간 출신을 뽑겠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진성준 위원 지금 공공기관의 규모가 크고 다뤄야 될 예산과 사업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이 아까 확인된 바가 있으니까, 정부예산보다 더 큰 규모라는 것 아닙니까?

○박수영 위원 다 합하면 정부예산보다 더 크니까 예산을 관장하고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기재부장관이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되고, 사실 그동안 공공정책국은 기재부 내부에서는 약간 좀 사이드라인 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챙겨서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 역시 보류네요.

12번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5페이지 설명을 빠뜨려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공운위 심의 의결 사항을 추가하는 건데요.

개정안은 공운위 심의 의결 사항에 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총인 건비 인상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각 기관이 경영목표를 수립하는 경우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시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임명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56페이지, 다만 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 시 공운위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경우 해임 시에도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법 제35조 3항 단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는 공운위의 의결을 받는 것은 적절해 보이나 현재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포함되어 이미 공운위 심의 의결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측 의견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여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인사하고 관련해서 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선임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현재는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데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현재는 공기업 기관장을 임명할 때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는데요. 준정부기관까지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굳이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행정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총인건비 인상률하고 관련되는 거는, 현재는 총인건비 인상률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예산지침에 포함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운용지침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지금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판결이 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예산지침에 넣어서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공운위 심의 의결을 받게 되면 이건 위헌판결을 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

○**박수영 위원** 차관님, 지금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안 그래도 제가 정리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55페이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55페이지? 지금 62페이지 아니에요?

○**조승래 위원** 55페이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본 거는, 법조문을 보고 있었어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어요?

○**최은석 위원** 정부 측 의견에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지금 공공기관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공운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게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이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생각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이 법에 규정하자, 공운위의 심의 사항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일견 위헌 시비가 공공기관의 노조들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그걸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저 인정해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단체협약 사항이잖아요. 그걸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늘 임금 지침,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언제나 법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아닌데 일선 공공기관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예외 없다라고 버텨 버리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공공기관이 그런 정도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일정하게는 보장해 줘야지요,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총인건비 상승률을 공운위가 심사하자, 당연히 심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만큼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이 또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규정하되 이른바 위헌 시비를 피하는 문제는 그 가이드라인을, 그 지침을 어떻게 일선에서 운영하고 집행할 거냐 하는 데 있는 문제이니 그 문제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허용해 주면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지금 준정부기관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기관장이나 임원들 다 추천되어 올라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수영 위원 그리고 공운위를 안 거친다, 지금 이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누가 임명합니까? 임명권자는 각각 기관마다 좀 많이 다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경우도 있고 주무기관의 장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는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데요, 감사는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사람이 맞는지를 더블 체크를 공운위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후보 줄어들면 그 사람 정해 가지고 가는데 공운위를 또 거치는 거는 사실은 집권 여당에서 반대하셔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걸 또 절차를 하나 더 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건비 인상을 문제는 기관마다 여건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많이 올려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총인건비 인상률도 공운위에서 굳이 위원 시비까지 걸리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는데 공운위 심의 사항으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저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이 2건에 대해서 다 반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모든 공기업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제도 확대로 인하여 감사의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과 상법 등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시 1인 감사 체제보다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합니다.

상법에서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상장회사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5페이지, 한편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중 감사를 감사위원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경우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24조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조항이 기본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감사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 조항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이요.

○**최은석 위원** 규모에 따라서 아주 소규모 기업에 굳이 이렇게 수인이 일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상법 같은 경우에는 2조라고 하는 그 기준을 두고 구분을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여러 분의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활동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정한 걸로 보여지니 저는 모든 공기업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조금의 행정 낭비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말씀 안 하시면 찬성이라는 입장인가요?

○**차규근 위원**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아니, 공기업 운영을 투명하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최은석 위원** 혹시나 비용이 들까 봐. 진짜 작은 회사들은 굳이 이렇게 많은 감사를……

○**진성준 위원** 모든 분들이 다 상임감사를 할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앞서 준시장형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확대·지정하자 하는 데서도 논란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감사위원이 있으면 좋지요.

다만 상법상 민간회사의 경우는 분리선출을 의무화하고 확대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성격의 것이어서 그렇게 일괄적인 잣대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상법하고 기껏 맞춰 가지고 2조 원 해 놨는데 그것을 또 2조 원 밑의 작은 기업들도 전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 과연 효율적인지. 그다음에 법 간의 체계, 균형 문제도 상법하고 기껏 맞춰 놓은 걸 다시 흔들 필요 있겠는가 하는 두 가지의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도 입장이 다릅니다.

13번 임원후보자 재추천 요구 등.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임원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부적절한 임원 임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 제기된 개정안의 내용은 시행령에 포함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훌륭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상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이요.

○**진성준 위원** 특별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태호** 모두 찬성입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1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신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나 임금실태 조사, 정책 연구 및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센터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공공기관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이미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 센터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기재부 공공정책국에서는 공공기관 인사·보수·재무 정책 등에 대해서 관련 조사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도 이미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존재하여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73페이지는 한국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개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방금 국회사무처에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신설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현재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분리해서 공공기관연구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설립한다 이게 지금 현재 법문의 내용인데요, 아니면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파트를 독립해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서 그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 두면서도 중복되는 기관의 설립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가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정태호 의원님 법안 마지막 조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정태호 의원님 법안 첫 조항 때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태호 의원님 법안,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방대한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방대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기도 하셨는데 공운위를 지금 기재부 산하에서 공공정책국이 계속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까지도 저희가 한번, 새 정부 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운위의 전반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개혁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운위를 기재부에서 독립시켜서 총리실로 이전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공공기관 공공성은 제고를 하면서 또 효율성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도 제고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또 331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각각 고려하는 그런 섬세한 개혁 방안이 공청회 등에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준 위원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나 정부의 입장처럼 ‘설치한다’하고 단서를 좀 신설을 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해서 필요시에는 별도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런 판단이 아니라면 기왕에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를테면 위탁업무처럼 수행할 수 있도록 두 개를 열어 놓으면 이 법안 취지는 다 달성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서를 규정하자, 지정·운영할 수 있음을 단서로 넣자.

○**최은석 위원** 저는 지금 검토의견에 있는 바와 같이 공공정책국이나 그다음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이미 센터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을 그냥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새롭게 신설하는 것들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생기는 것 같아서 일단은 기존의 공공정책국이나 공공기관연구센터와 다른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원래 취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 그 두 가지 안을 다 열어 놓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진성준 위원** 열어 놓는 게 어떤가 생각해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열어 놓는 방향으로 해서……

○**최은석 위원** 예, 다만 열어 놓되 중복되지 않는 것 그것만……

○**김영진 위원** 저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공공정책국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신설 관련한 업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정형화하는 형태로 센터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마디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있는 센터에 업무를 위탁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지금은 연구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김영진 위원** 위탁하고 있지요. 그것을 명문화한다는 겁니다, 센터 이름으로.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것을 흡수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김영진 위원** 두 가지를 같이……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게 열어 두자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래서 아까 진성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이 이렇게 문구로 반영해 보자면,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진성준 위원님의 말씀 주신 내용을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진성준 위원** 깔끔한 성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제가 한말씀 못 드렸는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다 정리했는데?

○**박수영 위원** 아니,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짧게 할게요.

○**소위원장 정태호** 하세요.

○**박수영 위원** 공공정책국이 몇 명입니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공공정책국장입니다.

60명 정도 됩니다.

○**박수영 위원** 60명?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예.

○**박수영 위원** 공공정책국은 무슨 일을 합니까, 60명이나 있는데?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말씀드릴까요?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평가 업무도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다 직접 한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조세재정연구원 센터에다 의뢰를 하고 또 경평단도 만들고 자문 교수도 있고 그려잖아요. 그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6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은 뭐 하고 14명이나 되는 센터를 또 만들고.

조세재정연구원에 있는 박사들이 기재부에 와서 센터 공무원으로 일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쪽이 월급이 훨씬 많은데 누가 오려고 그래요, 기재부에? 그것도 세종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합니다. 6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14명 조직을 또 만들겠다 또는 반드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전에는 직접 공무원이 다 평가하고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내가 과장 때 만든 제도인데, 연구회 제도라는 것, 공운위 이런 기본 개념도 제가 과장 때 만든 건데 그때는 숫자가 적어서 그랬다 할지 몰라도 저는 이 정도는 60명에 국장이 있으면 국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조직만 늘리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까 다 합의된 건데 그것을 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박수영 위원** 아니, 저하고 어차피 또 얘기하실 거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아까 임기근 차관님이 정리해 준 그 문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거지요?

○**박수영 위원** 일단 하고 다시 또 얘기하십시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 센터를 설립하자고 들면 공무원 숫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 가지고 별도로 설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공무원 역할을 나눠서 센터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지정·위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새로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상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것은 아까 정리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으로 72페이지, 센터의 소장 선임하고 연임입니다.

중단을 보시면, 성과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소장을 포함한 14명 이내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이사회의 의장을 소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장을 선임함에 있어 이사회가 소장을 추천하고 선임하고 있어 소장 선임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지금 별도로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정·운영하게 되면 센터 소장의 선임과 연임하는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공운위 심의 의결을 거치거나 막 임기 연임을 제한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진성준 위원 소장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할 경우에 시행령으로 위임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하실 말씀 있어요? 다른 분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 끝난 거지요?

○진성준 위원 끝으로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노동이사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노동이사제 관련해 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의견은,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은 개별 법에 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어 본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에 맞지 않다고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타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개별 법률 규정이 상충될 소지가 있고 출연연구기관과 같이 노동이사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안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원래 공운법의 기본적인 체계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이러한 거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운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관리를 하고요 기타공공기관은 각 주무 부처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스템 밑에서 판단을 해 보면,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에 관한 것은 공운법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필요한 경우에 공운법 전체 시스템에 맞춰서 개별 법률에 필요한 조항을 삽입해서 규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요.

○차규근 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예.

○차규근 위원 저는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런 취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해서 조직이 집단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록 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효율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이요.

○최은석 위원 제가 잠깐……

○소위원장 정태호 예.

○최은석 위원 여러 정부 부처들의 의견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김영환 위원 2차관님, 혹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 기타공공기관에 관련된 규정들이 좀 있습니까, 개별 법 말고? 아예 없으면 개별 법 개정을 해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나 이걸 결정하면 되는데,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조문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규정을 해도 무리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체계상으로 어때요? 체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개별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충이 되는데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런 등등의 경우에도 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도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이런 데 따로 비상임이사를 어떻게 구성한다가 돼 있는 경우에만 상충이 되고요. 개별 법에 없는 경우는 상충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입을 결정하면 자구상으로는, 예를 들면 개별 법에 있으면 개별 법에서 정리를 하고 개별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면 되지 않나요, 정책적으로 도입을 결정을 한다면? 자구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자구를 잡으려면 일단은 기타공공기관에도 도입하도록 규정을 하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요?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공운법에도 규정은 할 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개별 법에 있는 법들이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규정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개별 법에 있는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개별 법에 따른다.

○소위원장 정태호 단서에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다른 개별 법이 통과가 되면 따른다, 그런데 다른 개별 법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 개별 법을 바꿔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여하튼 간에 체계상으로 여기에 규정을 둘 수는 있다라는 거지요?

○김영환 위원 다른 법률이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 정도 입법 재량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차관님, 노동이사제가 언제 도입됐습니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 돼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수영 위원 언제 도입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 88개가 전부 대상 기관인데요, 76개 기관에 도입이 완료돼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 도입을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022년……

○박수영 위원 22년, 이제 2년 반 정도 지났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수영 위원 그러면 도입 이후에 평가, 기관들의 반응 이런 건 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도입 이후에,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런 걸 호소하는 공공 기관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보고서 역시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2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임기가 보통 2년, 3년 이렇게 되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평가도 한번 해 보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원래 도입할 때 기타공공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개별 법하고 충돌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을 먼저 해 보고—숫자도 제일 많은 게 기타공공기관이에요—그때 확장을 하든지 하자 해서 한 거였는데, 지금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바로 또 이렇게 확대한다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평가를 좀 해 보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고.

개별 법과의 관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 그건 조정할 수 있다 보더라도 평가는 좀 해 보고 신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경영에 노동자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해서 오히려 노사 간에 분규나 갈등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경영에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적어도 공기업에서부터 노동이사제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한번 해 보자는 뜻이고요.

○진성준 위원 그리고 이미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박수영 위원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아예 없는 기관들도 많을 걸요.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비상임이사가 없는 데도 있지 않나요? 노동이사를 도입하려면 비상임이사를 또 새

로 도입해야 될 텐데.

공공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예, 맞습니다. 비상임이사가 없는 기관도 존재합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작정 도입하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성준 위원 비상임이사가 없는 데는 안 넣으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거는 2018년 그때부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된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박수영 위원 아니, 안 돼서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그러니까. 18년도의 그거는 제가 직접 그때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태까지 특별한 부작용이, 그때도 그것 도입할 때 엄청 말들이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특별하게 거의 시비가 없는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대개 노동이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노조 집행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변호사나 아니면 전문가를 추천해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대개 합리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진 위원 노동이사제 도입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일방으로 한 건…… 같이 합의해서 노동이사를 추천해서, 여야 여러 가지 법 다 모아서 같이 합의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도입 이후로 특별하게 갈등이 있을 사안은 없었어요. 찬반이 아니라 같이 조정해서 합의했던 거고.

○소위원장 정태호 특별하게 하실 얘기가 있어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공운법 체계에 보시면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밑에 노동이사제가 공기업 임원의 임면 파트하고 준정부기관 임면 파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상으로 보면 공운법의 일반적인 체계에 따라서 기타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운법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체계상으로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4장이 ‘등’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4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등’ 이렇게 표현되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운영 등’이니까, ‘기관 등’이 아니니까 그러면 애초에 체계는 공기업·준정부기관만 해당된다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기타공공기관 조문들은 어디 쪽에 배치하고 있어요? 제가 전체 조문이 없어 가지고.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공공국장, 제가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4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등’은 붙어 있지 않고.
- 김영환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조부터 52조의2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타공공기관들이?
-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기타공공기관은 적용이 되지 않고 제4장의 16……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타공공기관은 다른 규정들에 있잖아요.
-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른 규정들은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지……
-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제4장을 제외한 1장부터 제5장까지 전 공공기관을 규정하게 돼 있고 기타공공기관은 특정한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 공공기관을 규정하게 돼 있고, 다만 4장만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 되어 있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4장을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운영’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자구 선택의 문제지 못 바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체계 자체를 좀 정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도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법 만드는 테크닉인데, 그런 규정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고칠 수도 있지 않아요?
- 소위원장 정태호 이렇게 하지요. 지금 이거는 법체계상의 문제이고 하여튼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공운법에는 기타공공기관 부분에 대한 것을 넣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 소위원장 정태호 또 한쪽에서는 넣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고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논리를 더 정리해서, 일단 밖에서 정리하고 나중에 할게요.
- 진성준 위원 전문위원 말씀 한번 들어 보시지요.
- 소위원장 정태호 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이고요. 3장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이니까, 사실 3장은 공공기관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3장에다가 넣을 수는 있습니다.
- 진성준 위원 3장에?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 소위원장 정태호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것도 보류해 놓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6페이지입니다.
- 노동이사 선임 시 15인 초과 이사회 구성 가능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 개정안은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기존에 15명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도래하는 경우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정수 15인이 넘는데 임기 도래가 안 돼서 선임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다른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기관 같은 경우는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내부 조정을 통해 가지고 노동이사제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못 하겠다고 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개별 법을 조정을 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게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이거는 검토의견 ‘다만’ 거기에 명확하게 방향이 딱 잘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명 있으면 그다음에 기존 이사의 임기가 도래할 때 노동이사 선임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풀어 주게 되면 16인으로 이렇게 이사의 숫자가 점점 증가할 그런 가능성성이 있어서 굳이 노동이사와 관련돼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지금 이 경우는 제가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경우는 15명을 누가 추천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립니다. 건강보험이다 보니까 이해당사자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당사자들이 다 자기 대표선수를 과연하게 돼 있는 구조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15명은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추천하지 않는 한.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사제를 적용하기가 원천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그 경우가 이거하고 또 하나, 두 개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단 법안은 노동이사제를, 개별 법에 의해서 노동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은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 다만 공운위법에서 15인 이하 이런 규정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 달라는 게 보건복지위원회 쪽의 의견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렇더라도 추천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정부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본인의 추천 봇을 하나 좀 줄이는 걸로 해서 의사결정을……

○**소위원장 정태호** 아무도 줄이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그거 줄이면 그쪽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최은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 풀어 주게 되면 다른 데도 그러면 16인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이사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가 많고 그건 해당 기관에 다 비용으로 또 귀결될 거라 이걸 한꺼번에 다 풀어 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결국은……

○**진성준 위원** 소위원장님,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개별 법들을 고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개별 법에서는 노동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는 만들었는데 공운위법

에 지금 15인 이하로 돼 있으니까……

○김영진 위원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이내로 돼 있으니까 노동이사를 추천하면 범위를, 숫자가 초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예외를 적용해 달라라는 건데,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성준 위원 개별 법이 우선 아닌가, 개별 법이?

○김영환 위원 개별 법을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진성준 위원 개별 법이 특별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개별 법은 이미 해결이 됐고.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이사 수가 한 사람, 두 사람 초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 일까요? 개별 법이 우선일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정태호 어떤가요?

○진성준 위원 정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개별 법이 이렇게 통과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별 법에서 16명으로 하더라도 공운위법을 다시 적용받아서 15인만 협용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개별 법을 개정했지만 임명을 못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개별 법을 16명으로 고치더라도 지금 그 법을 가지고 공운위법을 오버라이드 override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개별 법에서 소화를 하려면 지금 있는 15명 중에서, 예를 들면 정부위원이면 정부기관 1명을 빼고 여기에 노동이사제를 넣어서 15명의 구성을 바꿔 줘야 공운법의 규정하고 상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다면 공운법을 일정하게는 플렉서블(flexible)하게 규정해 놓든지 해 줘야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15인 이상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15인 이내로 맞추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을 2개 기관을 예외를 해 주게 되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이사제 티오 하나를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사회가 16명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운법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 89페이지 봐 주실래요? 89페이지, 조문의 4호를 봐 주십시오.

제25조제3항제2호, 제26조제3항 후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5인을 초과하는 경우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풀게 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관도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찍을 수 없느냐, 그러면 여기 4호를 이런 식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5인 이상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6인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겠지요.

○박대출 위원 그런 법은 없어.

○진성준 위원 그 두 기관만 문제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두 개 살리려다가 나머지 전부 예외 있으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대출 위원 기관 간 형평성이 더 큰 일이에요. 맞춰 봐야지.

○김영환 위원 건보공단하고 심평원 안을 조정하는 방법은 도저히 없다고 하나요?

○소위원장 정태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은석 위원 저는 불가능하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박수영 위원 아니, 정부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대출 위원 이런 빗장을 열 수 없다라면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빗장을 열어 놓으면, 형평성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다……

○소위원장 정태호 자, 해결책을 더 찾아보고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좀 더 협상들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결충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사람을 믿고 그냥 토론 없이 나중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토론 시간을 다 드렸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항목은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권입니다.

2권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황명선·용혜인·윤호중 의원안입니다.

그러면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심사 요지를 보시면, 24년 11월 27일하고 25년 2월 10일 이틀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개별 법이 산재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정 필요 의견과 시장경제 원칙 저해,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 정치 편향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기본법 제정은 시기상조다, 기존 개별 법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둘로 의견이 나뉘었고요.

11페이지 보시면 황명선·용혜인 의원안 이외에 25년 2월 27일 날 윤호중 의원안이 새로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한 항목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1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에 있어서 윤호중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다른 의원안과 달리 추가된 부분은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원안과 달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차이가 있는 점은 1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항목에서 윤호중 의원안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생산품 중에서 공사의 경우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우선 할주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에 있어서 차이점이 경영공시 대상을 다른 의원안에서는 대령으로 정하는 사회경제조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윤호중 의원안은 전체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하였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 경우에 사업결과보고서, 임원 현황 등을 추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20대, 21대에 각각 논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찬성 측은 시장경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다음에 반대 측은 이미 개별 법상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본법 제정은 오히려 법률 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본법 제정 여부는 과거 국회에서의 논의사항, 개별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사회적경제 부분은 여야 간에 오랫동안 논쟁점 중의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용어가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유엔에서 용어를 사회연대경제로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회연대경제라는 새로운 용어로 법도 발의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발의될 법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제정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얘기를 듣고 이것은 우리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은 논의를 여기까지만 하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는 걸로 전체회의에다가 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국유재산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당겨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지, 70항은 어떤 내용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심사자료 4권의 113페이지 보시면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장기사용허가 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할 때는 개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또 저희 국유재산 특례법에도 별표에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국유재산특례법을 통과시켜 줘야지 법사위에서 병합심사해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장기사용허가 특례의 효과 발생을 위해서 그 근거를 별표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장기사용 특례를 규정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에 비추어 장기사용허가 특례 추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동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법사위가 두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국유재산법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서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3권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태호 시작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위 심사자료 3권입니다.

3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사항이고 첫 번째는 혜택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지난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혜택에 대해서 기준금액

상향(현행 500억 그다음에 재정 300억 이상을 총사업비 1000억 이상, 국가 재정 500억 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만 재정준칙과의 연계 처리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R&D 예산 폐지는 정부안과 함께 재논의하기로 심사 때 얘기하였고요.

그래서 오늘 결정·논의될 사항은 예산 기준금액을 변경할 대상 사업이나 기준금액 상향 규모 그다음에 R&D 사업 예산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먼저 논의 필요사항이, 첫 번째로 R&D 사업의 예산 폐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R&D 사업을 예산 대상에서 삭제하는 의원안 발의하였고 정부는 R&D 사업을 예산 대상에서 삭제하고 구축형 R&D 사업에 필요한 건설사업도 예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R&D 사업에 해당하는 기타 재정사업도 예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해민 의원안은 R&D 사업을 예산 대상에서 삭제하고 구축형 R&D 사업과 별도 추진이 곤란한 건설사업도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10페이지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관련 법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방위에서 R&D 사업 예산 폐지 시 필요한 보완제도를 신설하려는 과학기술기본법 대안을 의결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법 대안의 상세한 내용은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R&D 사업 예산 폐지를 폐지해서 대규모 R&D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과 미래선도기술을 경쟁하는 국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R&D 사업 예산이 재정건전성에 기여해 온 순기능, 현행 제도하에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예산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R&D 사업 예산은 다른 사업 유형에 비해 예산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해서 R&D 사업 예산 폐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만약에 R&D 사업 예산을 폐지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만한 재정 투입 또는 사업 타당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또는 예결위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과학기술기본법은 이미 바뀌어 가지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R&D 사업 예산 폐지에 대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왼쪽의 하단 표를 봐 주십시오.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R&D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은요 시설 사업 성격이 있는 R&D를 제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R&D 사업과 관련된 필수 건설사업, 이 사업을 예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아래의 밑줄 한번 봐 주십시오.

'R&D 사업에 해당하는 기타 재정사업 제외' 이것은 뭐냐, 일단 연구로만 구성된 R&D 사업은 당연히 지금 예타 대상에서 빼려고 하는데요.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기 정부안에 있는 것처럼 이 문구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28페이지를 봐 주시면, 정부안 4호가 있는데요. 이게 예타 대상 사업을 쭉 규정하는 문구인데 여기에서 4호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이것을 사실은 제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이 문구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순수한 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 봐 주시면 이것은 기재위, 사무처에서 의견을 주신 내용인데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가 의결하는 경우 예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속하게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R&D 사업을 예타 폐지하는 그 취지를 감안했을 때, 현재도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여기서 국회는 본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이미 있으니 이 조항으로 갈음해 주시고 별도로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가 의결하는 사항을 예타 실시하는 방안은 이번에 예타 완화를 하는 취지에,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여기 관련된 조항은 새로 신설하지 아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박수영 위원** 질문을 좀……

○**소위원장 정태호** 예.

○**박수영 위원** 차관님,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규정은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10페이지 왼쪽 아래의 표에 있는 정부안대로 법사위에 가 있는 건가요? 과방위를 통해서 법사위에 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가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예타 대상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요. 과학기술기본법은 예타 폐지에 따른 보완절차가 있습니다. 보완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전제로 한……

○**박수영 위원** 보완절차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가재정법에서 R&D에 대해서 예타를 폐지할 경우에 과학기술법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폐지를 해야지 과학기술기본법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학기술기본법에는 R&D 폐지한다는 얘기만 들어 있는 건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폐지를 해 줘야 되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폐지를 할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요, 과학기술기본법은 폐지를 할 경우에 다른 보완제도를 도입하는 거고요. 우리가 국가재정법에서 폐지를 의결해 줘야지 그 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우리 그게 기초법이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저희가 기본법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요.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지난번 소위 때 예타 기준을 상향하는 문제와 R&D 부분을 예외로 두는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공감을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 다만 저를 포함해 가지고 몇 분이 국가재정법 문제, 결국은 지금 예타 문제나 이거의 기본이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저도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그 내용을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유보가 된 거거든요, 보류가?

그저께인가 장기재정전망 기재부가 발표했지요? 2025~2060년.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40년 후에는 GDP의 170%, 3배가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확대 재정을 당분간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게 지금 현 정부의 기조라고 하더라도 재정 문제를 전제로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도 좀 곤란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재정건축 문제 그 법안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수영 위원 박대출 위원님 말씀은 재정준칙하고 같이 도입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박대출 위원 물론이지요. 저는 제가 도입하자는 법안을 냈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재정준칙을 도입했을 때 이것을 동의하시겠다는 취지인지……

○박대출 위원 예, 저는.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 의견이요.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R&D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에 양당의 정책위 차원의 공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논의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와 처리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박대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예산을 계속 운용할 경우에 국가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들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지만, 그래서 세수 확보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는 세수 확보의 전망이나 노력이나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배제된 채로 현행 세법하에서의 세입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논의의 모든 근거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예타의 너무 과도한 기준 때문에 정말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꼭 필요한 대형 SOC 사업 등이 번번이 무산되어 버리고 그 때문에 지방의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일반사업의 예타 기준도 현행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은 별도의 제정법인 만큼 그 필요성을 다시 논의하시되, 또 저도 재정

준칙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재정준칙과 R&D 예타를 연계시켜서 그게 전제되어야만 R&D 예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고 R&D 예타를 재검토해야 될 별도의 필요성은 또 있는 것인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새로운 과학기술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뒤쳐졌다가는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박대출 위원님, 국민의힘의 재정준칙, 재정건전성에 관한 일관된 입장은 저도 잘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과학기술기본법 소관 상임위에서도 R&D 사업 예타 폐지에 관한, 그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금방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총력을 다해서, 국가의 존망과 미래의 경쟁력을 두고 사활을 다투는 이런 투자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R&D 예타 면제 부분은 이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 기재위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한중의원연맹 소속으로 중국 상해하고 항저우 AI 관련 기업과 학교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보수언론에서도 전문가들 수십 명과 함께 같은, 거의 비슷한 장소에 갔다 온 뒤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눈부신, 상당히 발달된 AI 기술과 우리의 여러 가지 규제나 뒤처지고 있는 이런 면에서 약간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사설이나 칼럼 등에서 지금 기획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AI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특히 R&D 예타 면제 부분은 국가적인 필요성을 감안, 국익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 예타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좀 제한.....

2번 항목까지 의견을 같이 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변경.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 R&D 예타 사업을 마무리하고.....

○**차규근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부에 한 가지 좀 유감인 게, 제가 자료 요구를 두 차례나 했는데 아직 제출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사업비 구간별 예타 신청·선정·통과 현황, 최근 5년간 예타 분야별 신청·선정·통과 현황, 최근 5년간 예타 면제 현황, 면제 사유별 분리, 어제까지도 그 자료가 제출 안 됐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를.....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차관님,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보면 SOC 쪽 깎아 주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R&D 쪽하고 2개가 있잖아요.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R&D하고 SOC 쪽을 비교하자면? 만 5년 평균이랄지 아니면 작년이랄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타 면제 사업만 봤을 때 말씀이지요?

○**박수영 위원** 예. 예타 면제 사업을 결정하려면 각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야 재정에 대한 충격을 우리가 볼 것 아닙니까?

예전에 R&D 사업에는 예타를 통과하든 예타를 면제하든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이 들어갔고, 이게 통과되면 R&D 사업은 예타를 면제해 줄 것 아닙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SOC 쪽은 얼마나 될 것 같냐 이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러니까 당년도……

○**박수영 위원** 작년도든 지난 5년간이든 비중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당년도 R&D 예산 중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박수영 위원** 그게 아니고 면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기준에 의하면 면제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애초의 기준, 1000억이나 500억 기준 때문에 안 받는 것은 빼고 이것 때문에 새롭게 받게 되는 비중이 R&D하고 SOC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큅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사업 규모로……

○**박대출 위원** 전체 규모부터 얘기해 봐요, 전체 규모.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사업 건수로 봤을 때는 SOC가 50% 정도 차지합니다.

○**박수영 위원** 건수, 돈 규모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돈 규모는……

○**박수영 위원** SOC 50%면 R&D도 50%라는 뜻인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예타조사 실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SOC랑 R&D가 있는데요. 우측의 실시 규모를 보면 이게 단위가 조 원이니까 24년의 경우 SOC 15.3조 원이고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규모가 R&D는 6조 원이고요. 그런데 2020년을 보면 SOC는 5조 원인데 R&D는 25.5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시면, R&D랑 SOC 예타조사 실시 대상 사업 규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게 다 면제가 된다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R&D의 경우에 제외되면 다 면제가 되는 거고요. SOC는 그 구간이 올라가니까 다 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요.

○**박대출 위원** 규모가 재정준칙과 반드시 연계돼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더 강해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5년간 SOC하고 R&D 규모를 대충 보면 한 150조 가까이 돼요, 두 개가. 이게 지금 실시한 규모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R&D 예타 통과율이 54%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 통과되는 액수 그리고 절반이 통과 안 됐는데 앞으로는 R&D기 때문에 예타가 그냥 다 면제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까? 액수가 2배로…… 2배가 아니라 2배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성이 많은 거지요, 이것도.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준에 통과된 것보다도 통과 안 된 것들이, 예산 규모가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제 판단으로. 그러면 절반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2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타 면제를 시킨다면 그냥 대략 짐작으로 볼 때 300조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진성준 위원 어떻게 300조가 됩니까?

○박대출 위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비타당성 실시 규모 SOC하고 R&D가 대충 보니까 한 150조 가까이 돼요, 두 개가. 그렇지요?

○김영환 위원 아니지요.

○박대출 위원 150조 되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열핏 그냥 한 거예요.

○진성준 위원 SOC하고 R&D하고 합쳐서?

○박대출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5년간……

○박대출 위원 5년간 하면 한 150조 되는 거예요.

○진성준 위원 5년간 총액…… 그렇다고 하고요.

○박대출 위원 그리고 지금 11페이지 보면 R&D 기준으로 볼 때는 54%가 통과율이니까 한 2배 정도, 어림잡아 보면 한 2배 정도 가까이 된다면 300조 가까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실시 규모가 통과된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연간 재정에서 예타를 통과된…… 뭐라고 해야 되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연간 우리 일반 재정에서……

○박대출 위원 실시 규모는 통과된 것, 통과 안 된 것 합쳐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박대출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더라도 150조잖아요. 그렇지요? 150조잖아요. 150조 원의 규모를 재정에서 부담……

○진성준 위원 아니, 왜 SOC를 다 합쳐서 말씀하시지요? R&D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대출 위원 R&D도 물론 하는데, 그러면 R&D를 하더라도 절반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논의 자체를 반만 잘라서 R&D만 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쪼개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닐 거라고,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R&D……

○박대출 위원 일단 반만 쓰고 보자는 식으로 R&D부터 논의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지요.

어차피 지금 이게 예타 면제 부분에서, 이 소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문제하고 같이 된 거고 지금 이 법안에서는 R&D만 가지고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 속된 말로 지금 일단 반띵부터 하자 이렇게 지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주장하느냐? 그만큼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액수를 보고 지금 그런 판단이 든 거라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의견이요.

○박수영 위원 보고하신다고 아까……

○소위원장 정태호 보고하실 거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R&D와 관련돼서……

○소위원장 정태호 본인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저희가 18년부터 기재부로부터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위탁받아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4년까지 예타가 신청된 게 총 한 450건 정도 신청이 됐고 그중에 탈락된 숫자를 다 제외해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은 한 87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87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규모, 보통 예타가 사업 기간이 한 10년짜리가 많기 때문에 그 87개 사업에 대한 전체 총사업비를 따지면 그게 한 60조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조 원은 매년 60조 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총사업비 자체가 60조 원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1년에 대충 6조 원 정도 되네요? 10년짜리 사업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그렇게 산술적으로 보면……

○진성준 위원 산술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예.

○박대출 위원 아니, 그것은 그 앞에서 중복돼서, 누적돼서 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왜 빼고 계산을 해? 당해 연도에 R&D가 2020년에 25.5조, 20.5조…… 이 계산만 하고 그 앞에서 넘어온 것은, 2019년·2018년에 넘어온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사업이 당해 연도만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3년·5년·10년씩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포함된 그 규모는 왜 빼 버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실시는 이렇게 25조를 했고 여기 통과된 거는……

○박대출 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규모를 5년치 계산해서 그 해 연도 만큼만 계산을 하잖아요. 순증만 계산하잖아요.

○진성준 위원 10년의 총사업비가 60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대출 위원 그게 아니잖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지금 한 6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통과된 사업이 87개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총사업비 규모를 합한 게 60조 원 되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60조라는 거잖아.

○박대출 위원 아니, 통과된 걸 5년 동안 합쳐서 60조라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예, 5년 동안에……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그런데 거기는 다……

○박대출 위원 그 5년 이전에 통과해 가지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산을 왜 안 하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아, 18년 이전에……

○박대출 위원 당연하지. 그걸 왜 계산 안 해? 그것은 공짜로 누가 주나요?

○진성준 위원 그렇게 누적으로 하자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게만 보실 문제 가 아니고……

○박대출 위원 아니, 규모가, 그렇게 하는 거지.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을.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전 것까지 쌍다 들여다보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박대출 위원 아니, 재정에 얼마큼 부담이 있느냐 그것은 해야지, 순증만 가지고 계산하 면 어떡해.

○김영환 위원 그러면 예타가 통과된 R&D 사업을 기준으로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 도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예타 통과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보통 통상적으로 R&D 예타 절차가 신청하게 되면 대상 선정 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탈락이 되고요.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인 본 예타조사 실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또 한 50% 정도 미만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고, 그러면 토텔 매년 신청된 대비 숫자로 해서 20%에서 한 30% 정도 못 되는 그 숫자가 결국은 최종적인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총규모는……

○김영환 위원 올해 기준으로는 얼마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연간으로 따지면 그게 한 1조에서 1 조 5000억 사이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신규 플러스 계속사업 합쳐서 1조 5000억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그것은 신규만……

○박수영 위원 신규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그 해에 신청이 되고……

○박수영 위원 신규만.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R&D 예타 문제가 자꾸 얘기되는 것은 거기에 투입되는 재정 의 규모가 뭐 특별히 커져서라기보다 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사업들이 자체되더라. 그 때문에 발생하는 경쟁력 상실이 있더라라고 하는 문제 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차관님, R&D 사업에 대한 예타 이게 그동안, 혹시 예타 결과에 대해서 무용론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R&D 사업에 대한 예타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R&D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적정성은 잘 검증을 한다는 평가 그것은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R&D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과기계 연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R&D를 적기에 하는 데 R&D 예타가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이 된다, 그런 건의사항은 수차례 걸쳐서 있어 왔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그 걸림돌이 예를 들어서 자체된다는 건지, 아니면 본래 R&D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가,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것은 예타 결과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R&D 사업 자체가 자체된다 이런 게 많았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R&D 예타를 안 해야 되는데 R&D 예타가 R&D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장애가 많이 된다 이런 건 끊임없이 현장에서 얘기되고 건의돼 왔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그 장애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진성준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예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R&D가 성공했을 때 충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확실한 것만 예타를 통과하는 거지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분명한 것만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모험적 연구라든지 신기술, 창조적인 연구는 불가능한 거지요. 그 때문에 연구개발자들이 끊임없이 좌절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의 기반이 넓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조금 더 전문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타를 폐지했을 때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어떤 프로세스로 실시할 거냐라고 하는 대안을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다, 적어도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대출 위원** 처음 취지를.....

○**소위원장 정태호**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제가 말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최은석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최은석 위원** 지금 진성준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규모 R&D 사업에 있어서 아무런 사전 검증 없이 하는 게, 이게 실은 보면 R&D 사업이 그만큼 예산 낭비가 되게 많은 사업이고 어찌 보면 불확실성에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타에 대해서 만약에 기간이 이렇게 자체된다 그러면 예타와 관련돼서 좀 더 빠르게 결론을 내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보완할 것들,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말씀 다 하신 거지요?

○**최은석 위원** 정부 R&D 예산이 시중에서는 눈먼 돈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타까지 없어지게 되면 이것 진짜 앞으로 R&D와 관련된 이름만 붙으면 정부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저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 문제 때문에 과기위에서 보완 대책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맞습니다. 지금 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R&D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R&D가 근본적으로 예타 제도에 맞는 거냐 그런 논란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이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과기정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스 오어 폐일(pass or fail)이냐,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런 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R&D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냐, 사업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규모가 적정하냐 그런 거를 미리 예타 제도가 아닌 사전 절차로서 사전기획점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킨 게 이번에 과기정통위원회의 의사결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은석 위원님의 염려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과기정통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조금 보충설명……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보충설명 한다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는 완전히 안 보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R&D의 속성을 반영을 해서 예타를 대체하는 새로운 심사 제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법에 있는 거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삭제를 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심사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과학기술기본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순수 R&D,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R&D 유형이 있고 또한 대형 가속기라든지 우주 발사체처럼 정말 대규모의 시설장비를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을 저희가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앞의 순수 R&D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 한 160명 정도 민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동원을 해서 부처들이 그러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획의 완성도를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 검토 결과를 요구를 할 때는 그 검토 결과도 저희가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발사체라든가 대형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규모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예타 제도 내에서는 한 번 심사로 끝납니다. 통과가 되면 10년짜리가 그냥 그 계획대로 가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단계 단계별로 끊어 가지고 1단계에서 그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한 번 보고 거기서 만약에 이행이 안 됐으면 그것들을 보완을 해서 2단계로 넘기고 또 그것이 통과가 되면 3단계로 넘겨서 실질적으로 대형 가속기와 같은 R&D 사업은 지금 현재의 예타 제도보다는 정말로 단계 단계별로 더 철저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로운 제도로 마련돼 있는 게 지금 과학기술기본법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예, 질문하십시오.

○박수영 위원 국장님, 기존의 예타는 얼마나 걸리고 지금 바꾼 제도, 연구형과 구축형이 있는데 지금 바꾼 제도는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종전의 예타 제도 내에서는 통상 한번 신청해서 바로 통과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10%가 채 안 되고요. 보통 대부분이 재수, 삼수를 하기 때문에 총 기획에서부터 최종 통과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소요 기간은 한 3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양자기술이나 AI처럼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그런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 현장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고요.

○박수영 위원 그래서 바꾼 거는 얼마 걸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새로운 제도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연구형 순수 R&D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장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구축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구축형은 말씀드렸듯이 단계 단계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얼마가 걸린다라기보다도 1단계 심사를 했을 때 그거는 저희가 한 1년 이내로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단계를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점검을 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기는……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R&D……

○박대출 위원 지금 말하는 그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국가전략기술인데 예타를 해요? 예타 면제 대상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이라고 지금 현재 예타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난번에 그거 한 거 아닌가?

○소위원장 정태호 그거는 세액공제고.

○박대출 위원 제가 조금 더……

○소위원장 정태호 마지막 발언입니다.

○진성준 위원 김영환 위원 발언 안 했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하시지요.

○김영환 위원 지금 논의의 핵심이 사실은 R&D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라는 예타 구조가 과연 맞냐 이게 이제까지 문제 제기해 온 것들이잖아요, 그게 지금 과학기술기본법에 제기된 문제이고.

그러면 이렇게 예타를 다른 대체·보완으로 검토를 하면 재정총량, 그러니까 R&D의 재정 순증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우리 재정위기를, 압박할 정도로 이 정도 되는 거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사실은 항상 재정총량을 정하고 빚을 얼마 정도로 하고 R&D 분야로 얼마를 할당을 하고 이거는 늘상 기획해서 실링으로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구조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예타 제도 폐지하고 보완 제도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R&D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조금 기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예타 제도, 일반 SOC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베니핏(benefit)과 코스트(cost)를 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대규모 상상력을 요구하고 기초기술,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뭐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결과물인데 이거를 일반 예타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 이것 되게 임의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니드(need)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가능한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제가 했던 내용이 대략 나왔는데요.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기간을 확 줄인다 그리고 필요한 기술의 R&D 연구에 대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한다 해서 시간은 다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R&D 예산에 총액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도 몇 프로, 올해 총액에서 몇 프로 상승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올해는 19.3%가 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범위 내, R&D 총액의 범위 내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들은 과기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심사를 통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R&D 예산에 대한 예타 면제 사안이 전체 예산과 국가 예산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R&D 예산의 총액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그 기술에 대한 판단들은 그 분야인 과기부에서 결정을 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과기부에서 오신 정책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부처에서 사업 요구를 할 때, 지금 현재 재정 당국에서 각 부처별로 실링(지출 한도)을 주고 있습니다, R&D에 대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그 해에 사업 요구를 하려고 그거는……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과기부도 그럴 거고 아마 국토부도, 국토부는 금액이 상승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1년 SOC 예산의 캡이 딱 있으니까 예산 증가율이나, 올해 728조로 됐으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와 예산 전체에 대한 문제는 전체 총액의 캡이 있고 또 선정에 대한 과정이 있는데 그 시간을 현재 3년이나 여기 나와 있는 15~16개월, 18개월에서 확 줄여서 짧은 건 5개월, 긴 거는 1년 이내로 해서 한다라는 거라서 큰 방향에서 제도개선

에 대한 부분이고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존한 것을 국가재정법에서 좀 정리해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타 사업의 통과 개수와 통과 규모와 R&D 예산 전체 규모는 서로 일대일 대응 관계라거나 플러스알파가 되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마지막으로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지금 다들 말씀드린 부분이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전혀 다른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 본질을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실링을 두기 때문에 재정의 운용 폭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만 R&D의 특성을 살려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게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벤처 2만 개 육성 사업을 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벤처사업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거의. 거의 실패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게 토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IT 강국이 되는 그 토양을 만들어 준 거였거든요. R&D도 그런 기본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R&D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가야 된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장기재정전망에서 했고 또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세수 부분은 감안이 안 된 일방적인 산술치 170%라는 수치가 나온 거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재정 운용의 틀은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움직이면 R&D 예산도 그렇게 활용을 해 가면서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틀부터 좀 만들어 놓자. 국가 예산을 쌈짓돈 쓰듯이 이거는 몇 푼 안 되니까 실링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총액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관리재정수지를 몇 퍼센트씩 해 가면서 재정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구체적인 거는 나중의 문제고 지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 틀 속에서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면 과학기술 R&D 예산을 정할 때 제 기억으로는 전문가들과 한 8개월의 협의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R&D 예산을 정할 때 작년 10월 달부터 이게 진행이 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10월 30일까지 소요들 쭉 받고 그다음에 3월 말까지인가 과학기술심의회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5월 달인가 또 뭐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 6월 30일 날 기재부에 통보를 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다른 예산 책정하고는 다르게 과학기술 R&D 예산은 그런 8개월의 긴 시간을 가지면서 단계 단계마다 과학기술심의회가 개입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R&D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예산과는 다르게 전문가들이 개입되고 대단히 촘촘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재정전략회의에 보고가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보면, 그런 절차가 있고 이번에 과기위원회에서는 또 보완적인 대책도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도 AI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2~3년이 그야말로 골든타임인 것 같고 시급성도 있고 또 그런 빠빠한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통 크게 한번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진성준 위원님께서 아까 또 재정준칙을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점이 박대출 위원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우선 R&D 부분은 바쁘니까 해 주고 SOC 부분 할 때는 재정준칙과 연계해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재부차관은 지난번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재정준칙에 관한 문구를 딱 뺏단 말이에요. 기재부차관이나 기재부장관도 진성준 위원님같이 열린 마음으로 재정준칙을 들여다 볼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문구를 뺐 것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정준칙 논의하는 절차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좋습니다.

○진성준 위원 세수 확보도 해야 돼, 재정준칙 하자고 그러면 세수 확보는 안 하고……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의결을 할게요.

박대출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동의 안 하시면 그냥 이것은 표결을……

○진성준 위원 소수의견으로 기재하시고……

○박대출 위원 이 재정 운용의 틀을……

○김영환 위원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으로 박대출 위원님 의견을……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해서……

○박대출 위원 그만큼 급하면 재정준칙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 기준이 필요하다면 기준도 상향해도 좋고 다 좋아요, 선언적 의미도 좋고. 그게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준칙 도입 안 한다고 매번 언론이 비판하는 것 아시지요? 기사 많이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봤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박대출 위원** 재정준칙 법안 도입 안 했다고 또 문제 삼을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표결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표결은 우리가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없지요.

○**박수영 위원** 소위에서 표결한 적 없으니까 위원님들 오시라 하세요. 그래서 정리해서…… 일단 수가 안 되거든요.

○**소위원장 정태호** 수는 돼요.

○**박수영 위원** 박대출 위원님 빠지면 안 된다고……

○**소위원장 정태호** 의결정족수는 돼요.

○**박수영 위원** 돼요? 되면……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표결하기 좀 그렇잖아요.

○**박수영 위원** 표결하기는 좀, 우리 그동안에 안 해 왔는데, 그 대신에……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달고……

○**박대출 위원** 아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도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재정준칙이 사실은 제도적인 틀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백번 맞는 거고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해야지, 의미가 있으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재정준칙의 도입의 시기와 수준,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나라 여건도 봐야 되고요. 외국 같은 경우 지금 하도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 재정준칙 자체를 완화하고 이런 노력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완화하는 것 넣으면 되지. 제 법안에도 완화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 다 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관리재정수지 기본을 3%로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향할 수 있는 조건도 다 명시되어 있고 반드시 준수돼야 되는 조건이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라 다 얼마든지 가능한 조건으로 넣고 거기 안에도 유보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큰 틀에서 선언적 의미라도 있게 이 법안을 해야지, 국가 재정에 대한 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걱정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 재정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준 나라 살림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도 못 하는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박수영 위원** 지난번에……

○**박대출 위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 처리를 할 필요 때문에 지금 그게 발의가 됐고……

○**박수영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는 상당히 많이 얻어맞았지요. 너무 방만하게 하면서 왜 예타를 다 상향하려고 하느냐는 언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준칙과 연계는 필요하니까 재정준칙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넣든지 해서 합의 통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진성준 위원 아니, 뭘……

○박수영 위원 아니, 열린 마음은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열린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 무슨 부대의견이겠어요, 정부에 촉구하는 것 이지.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지난번에도 예타 면제 관련해서 국민의힘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 재정준칙 관련되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두세 달 전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오피니언리더들 같이 해서 중국의 상해와 항저우 R&D 센터나 기업 갔다 온 다음에 중앙과 조선이 기획 기사를 계속 내놓았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실패를 용인하는 중국,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감한 투자를 한 결과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술 경쟁 시대에 왜 이렇게 뒤쳐지고 있는가’라는 논조의 그런 기사들을 갖다가 두 언론에서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SOC에 대한 예타 면제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R&D 예타 면제에 관해서는 지금 주류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까 손 들던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저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차규근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 그대로거든요.

주로 여론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혹시 SOC 낭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SOC하고 재정준칙을 긴밀하게 연계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R&D는 조금 성격을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닌가, R&D도 물론 국가 예산의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야말로 위기고 피크 아웃(peak out) 단계 아니냐라는 걱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SOC 예타하고 재정준칙과의 연계 이것은 또 일용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R&D는 그 범주에서 약간 달리 생각하는 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올바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게 쌈짓돈 논리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간사 협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6항부터 38항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분히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가능한 한 우리 소위가 합의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수석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R&D 예타 폐지를 지금 의결하시려면 그 전에 시행일하고 경과

조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하거든요.

○소위원장 정태호 어떤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5페이지 보시면 R&D에 대해서 시행일이 바로 시행하는 게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있으니까 이제 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과조치는 정부안과 같이 이 법 시행 당시 예타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R&D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한 결로 보입니다.

그리고 즉시 시행이냐 아니면 몇 개월 후 시행이냐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지금 즉시 시행을 해야 10월 달까지 R&D 계획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즉시 시행을 해야 과기정통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제도가 작동해서 실질적으로 27년 예산부터 반영이 가능, 그렇게 해도 27년 예산부터 반영이 가능합니다.

○김영진 위원 박덕흠 의원안도 바로 공포는 아니었잖아요. 박덕흠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정부안에 동의……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R&D 예산이 신속하게 예타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과 제가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재정준칙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관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가 재정준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등을 포함해서 국회의 재정준칙 논의 과정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총 3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이 뭐지요? 다음 안건.

○김영환 위원 체계·자구 위임하고 가야 되지 않나요?

○진성준 위원 체계·자구 위임부터 받으세요,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맨 마지막에 일괄해서……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그다음 게 예타 상향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다음 것은 500억에서 1000억으로의 상향하고 그 상향할 대상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SOC로 할지 건설로 할지.

○소위원장 정태호 그거야말로 박대출 위원님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박수영 위원 예, 재정준칙과 연계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일단 R&D만 하시고 패스하고……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박수영 위원 담배사업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언론에 야단맞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정태호 해야지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가 국감보고서도 채택해야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볼 때 다음 주는 대정부질의라 전체회의 소집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22일이나 23일 중에 법안 통과된 것들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 그때 국감보고서도 채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보면 다음 주 중에 우리 소위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정부질의가 있으니까, 오후에 대정부질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소위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이번 주에는 힘들지요?

○김영환 위원 17일 날이 경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 쪽에 저 있고 또 다른 분이 없나?

○소위원장 정태호 저도 경제 분야 질의예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17일은 빼야 되잖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하면 15일 날…… 오늘이 9일이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소위를 한 번 더 소집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간사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르면 이번 주에 할 수도 있고 늦으면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간사 간에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소위를 소집해서 남아 있는 것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공기관운영법 관련돼서 합의가 안 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간사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안을 만들도록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회의에서는 가능한 한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간사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하고요.

그래서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영진 김영환 박대출 박민규 박수영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차규근 최은석

○ 청가 위원(1인)

유상범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